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53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532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2068534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B

피고,상고인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애플

담당변호사 이종엽,조혜인

판결 선고 2019. 5. 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2068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 8. 9.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AL의 이사권 용지에 관한 분양권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242,400원으로 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물각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 다17482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권 분양권매매 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택지의 전매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주심 대법관 권순일대법관 이기택대법관 김선수